

자료 기탁 약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약관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(이하 “KOSSDA”로 칭함)과 동 자료원에 자료를 기탁하는 개인 또는 기관 간에 체결되는 협약의 내용 및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있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-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1. 기탁자: KOSSDA 자료 기탁 약관에 동의하고 KOSSDA에 자료를 기탁한 개인 또는 기관
 2. 이용자: KOSSDA 웹사이트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여 KOSSDA의 제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
 3. 자료: KOSSDA가 수집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양적 및 질적 자료
 4. KOSSDA 웹사이트: KOSSDA가 이용자에게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(<https://kosdda.snu.ac.kr>)
 5. 데이터세트(Dataset): 자료와 자료관련 문서로 구성된 전자파일 세트
 6. 메타데이터: KOSSDA가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정보
 7. 데이터베이스(DB): KOSSDA가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자료, 메타데이터, 자료 관련 각종 문서들의 집합체
-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의 용어들은 관계 법령과 KOSSDA의 각종 안내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약관의 공시와 개정)

- ① KOSSDA는 이 약관의 내용을 KOSSDA의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시한다.
- ② KOSSDA는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된 약관은 본 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한다. 기탁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료 기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4조(약관 외 준칙)

- ①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
- ② KOSSDA는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KOSSDA의 각종 안내를 통해 공지한다.

제2장 자료의 기탁과 가공

제5조(자료의 기탁)

- ① 자료 기탁은 기탁하는 자료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실명으로 해야 한다.
- ② 자료 기탁 협약은 기탁자와 KOSSDA가 자료 기탁 협약서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해서 기탁자와 KOSSDA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6조(자료의 가공과 보존)

- ① KOSSDA는 기탁 받은 자료를 다음과 같이 가공하여 보존한다.
 1. 자료의 장기 보존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포맷으로 디지털화하여 복제하고 저장
 2.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류를 수정
 3. 개인 또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처리
 4. 자료의 체계적 보존과 효율적 검색을 위하여 KOSSDA가 정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DB를 구축
 5. DB로 구축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포맷 변경
- ② KOSSDA는 기탁 받은 자료를 적절히 가공하여 영구 보존할 책임이 있다.

제3장 기탁자의 권리와 의무

제7조(기탁자의 권리)

- ① 기탁자는 기탁한 자료의 공개 시기와 범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.
- ② 기탁자는 자료 기탁과 관련한 불만 또는 이의를 KOSSDA에 제기할 수 있으며, 제기된 이의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KOSSDA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탁자의 의무)

- ① 기탁자는 기탁 자료의 공개로 인해 KOSSDA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.
- ② 기탁자는 KOSSDA가 요구하는 소정의 메타데이터 요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- ③ 기탁자는 기탁 자료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귀속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즉시 KOSSDA에 알려야 한다.
- ④ 기탁자는 기탁 자료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등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KOSSDA에 알려야 한다.

제4장 KOSSDA의 권리와 의무

제9조(KOSSDA의 권리)

- ① KOSSDA는 기탁 자료를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가공하여 보존할 권리가 있다.
- ② KOSSDA는 기탁자와의 협의와 일정한 평가를 거쳐 기탁 자료를 DB 구축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.
- ③ 자료의 가공과 DB 구축 과정에서 KOSSDA가 산출한 소프트웨어, 이용자 가이드, 자료 정보 문서, 메타데이터 등에 대한 저작권은 KOSSDA가 갖는다.

제10조(KOSSDA의 의무)

- ① KOSSDA는 기탁 받은 자료를 기탁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.
- ② KOSSDA는 기탁 자료가 동 자료원에서 관리되는 한 자료의 무단 복제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③ KOSSDA는 기탁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즉시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.
- ④ KOSSDA는 기탁 자료가 영구 보존되도록 DB 시스템의 안전과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 다만, 예방할 수 없는 도난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5장 협약의 개시와 종료

제11조(협약의 개시)

이 협약은 기탁자가 기탁약관에 동의하고 KOSSDA에 자료를 기탁함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.

제12조(협약의 종료)

- ① KOSSDA 또는 기탁자가 이 약관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고 피해를 30일 이내에 복구해 주지 못할 경우 자료 기탁 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② 기탁자 또는 KOSSDA가 자료 기탁 협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,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은 서면 요청 3개월 후에 자동 해지된다.

제6장 기타 사항

제13조(손해 배상)

- ① 기탁자 또는 KOSSDA가 자료 기탁 협약 후 2년 이내에 협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협약 해지 요청자는 상대방에게 자료의 아카이빙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.
- ② KOSSDA가 자료 기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KOSSDA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.

제14조(관할 법원)

- ① 자료 기탁과 관련하여 KOSSDA와 기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한다.
-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쌍방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- ③ KOSSDA와 기탁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다.